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○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중랑구 제4선거구 민병주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
○ 이번에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재개발사업 추진 시 의무적으로 건설하는 재개발 임대주택 건축비의 합리적인 매입가격 산정을 위해

「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」가 개정되는 경우의 건축비 산정방식을 신설하고,

잔금1차 지급시기를 현행 ‘준공인가’에서

‘임시사용승인’까지 포함하도록 조기화하여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.

○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,

우선 「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」가 개정되는 경우에 개정고시일 이후의 잔여 건축공정률에 대한 건축비는

개정된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건설자재비 및 노무비 상승 등에 따라
재개발정비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에
표준건축비 인상을 합리적으로 적용해
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재개발 임대주택 품질향상과
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

- 또한 현행 ‘준공인가’로 되어있는 잔금1차 지급시기를
‘임시사용승인’도 포함하도록 하여
임시사용승인과 준공인가 일자 사이의 시차를 고려함으로써
조합의 조기 자금확보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